

總力大特輯

URUGUAY ROUND와 知的所有權(1)



李氣盛
(特許廳 審判所長)

■ 次 目 ■

- I. 머리말
- II. 우루과이 라운드의 推進背景
- III. 閣僚宣言文內容 및 協商構造
- IV. 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 V. 知的所有權保護의 最近動向
 - 가. 美國등 先進國主張의 背景
 - 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論議事項
 - 다. WIPO에서의 推進事項
 - 라.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動向
- VI. 맷는말
(고딕은 이번號, 평조는 다음號)

I. 머리말

今年 7月부터 그동안 論難이 많았던 物質特許가 認定되고 外國人の 著作權 保護가 強化되었으며 이를 계

기로 하여 知的所有權에 對한 우리 業界와 一般國民의 關心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의 改正法律의 施行으로 모든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의 實施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問제에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國際的으로는 現在 제네바에서 論議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知的所有權이 통상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차택되어 이를 規範화할 것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서두르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규정의 개정을 위한 多者間 協商으로 GATT는 2次大戰後 세계貿易의 自由化와 擴大를 爲하여 美國의 提唱으로 出帆하였으며 이는 金融分野에 있어서 IMF및 IBRD와 함께 오늘날의 自由主義 市場經濟體制의 發展을 가져온 兩大支柱라고 불리어오고 있다. GATT는 그 탄생以後 지금까지 不斷히 改正을 계속하여 이미 7次에 걸쳐 改正을 하여 왔다. 그러나 GATT는 그 기본이 되는 自由貿易主義(Free Trade)와 最惠國待遇原則(Most Favorable Nation Treatment)에 많은例外를 認定하고 있으며 이러한例外와 變則의 遷回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惑者는 "GATT는 危機에 當面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對先進國 輸出의 約 40%가 規制下에서 수출되고 있음을 볼때 GATT體制의 無力を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改正은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9月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開催된 GATT閣僚會議에서의 宣言으로 第8次 GATT規範의 改正을 爲한 多者間協商은 公式으로始作되었으며 이미 협의기구의 결성이 완료되고 分野別로 日程이 마련되어 協商을 進行하고 있다.

知的所有權은 이번 協商中 하나의 議題로 採擇되었으며 앞으로 知的所有權은 通商問題와 關聯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될 뿐 아니라 WIPO에서도 特許法의 統一化, 바이오 ベ크놀러지와 集積回路 Layout의 國際的 保護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지적소유권에 關한 國際規範에는 커다란 變化와 進展이豫見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가장 큰 交易相對國인 美國에 의하여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은 國內의으로는 知的所有權保護強化를 爲한 여러가지 法案이 제출되어 현재 議會에 계류중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30年 美關稅法 337條의 改正인바, 現行規定은 (i) 輸入品이 知的所有權을 侵害 (ii) 美產業에 對한 實質的 侵害(Substantial Injury)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物品搬入禁止命令 또는 不公正行爲中止命令을

할 수 있으나 改正案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美產業에 對한 被害要件을 削除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소유권보호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의 Texas Instrument Co는 日本의 電子業界 8個社와 우리나라 三星電子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美國際貿易委員會 (ITC)에 제소하였으며 수입정지를 우려한 大部分의 日本業界들은 T.I社와 和解가 성립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Texas Instrument社 측이 요청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너무나 큰 金額이라고 傳聞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침단산업발전에는 美業界的 特許權侵害제소가 최대의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우루파이 라운드를 개관하고 知的所有權에 關한 論議를 좀 더 詳述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우루파이 라운드의 추진배경과 閣僚宣言文內容 및 協商構造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知的所有權保護의 最近動向의 順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II. 우루파이 라운드의 推進背景

가. 過去의 GATT Round

GATT는 1948年 設立된 以來 世界貿易擴大의 自由貿易基調를 유지하기 위해서 不斷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차례에 걸친 多者間貿易協商을 통하여 改正되어 왔다. 第6次 캐네디 라운드 까지는 주로 그 당시에 무역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高率關稅였음으로 이를 離去하는데 노력하였다. 제7차 동경라운드에서는 既存關稅率을 平均 33%를 인

〈表 1〉 GATT多者間 貿易協商 一覽表

| 回數 | 名稱 | 期間 | 參加國 | 開催場所 | 新讓許品目數 |
|----|---------------|--------------------|------|----------------|---------|
| 1 | 일반관세교섭 | 47年 4月～ 47年 10月 | 23개국 | 스위스 제네바 | 約45,000 |
| 2 | " | 49年 8月～ 49年 10月 | 32 " | 불란스 Annocay | 約 5,000 |
| 3 | " | 50年 9月～ 51年 4月 | 34 " | 英國 Torguay | 約 8,000 |
| 4 | " | 56年 1月～ 56年 5月 | 22 " | 스위스 제네바 | 約 3,000 |
| 5 | Dillon Round | 61年 5月～ 62年 7月 | 23 " | " | 約 4,400 |
| 6 | Kennedy Round | 64年 5月～ 67年 6月 | 56 " | 제네바등 | 約30,000 |
| 7 | Tokyo Round | 73年 9月～ 79年 7月 | 99 " | 東京·제네바 등 | 約27,000 |

하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제거를 위하여 11개의 協定 (MTN)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結果 2次大戰後에 30%가 넘던 先進國의 平均關稅率은 10%以下로 引下되었다.

나. 우루파이 라운드의 擡頭背景

1) GATT기능의 약화

GATT는 출발 당시 되도록 많은 國家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많은例外를 許容치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후에도 운영과정을 통하여 GATT의 自由貿易主義와 最惠國待遇原則를 참식하는 여러가지 類型이 蔓延되어 왔다. 첫째, GATT는 地域的經濟統合을 위한例外를 認定함으로써 域內貿易을 증진시켰으나 이는 域外貿易을 差別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EC의 域外貿易比重이 적은 것이 그 代表의 例라고 하겠다. 둘째, 섬유·농산물 등 품목은 GATT體制 밖에서 貿易이 이루어지는 것이 長期化되고 각國의 輸出規制는 점점 더 強化되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는 纖維輸出開途國으로부터 農產物은 美國·호주·뉴질랜드 등 農產物輸出國으로부터 改正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셋째, 최근의 무역분규는 무역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현재의 GATT體制는 이러한 분쟁을 解決해 나갈 手段이 缺如되어 있다. 현재의 분쟁처리방안은 양국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결을 권장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이사회에서 勸告案을 채택,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侵害國이 권고안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侵害國이 報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強大國의 경우는 보복이 가능하겠지만 弱小國의 경우는 이러한 自力救濟는 不可能한 것이다.

2) 保護主義의 擴散

過去 7次에 걸친 協商으로 關稅率이 낮아져 關稅가 더 이상 國內產業保護手段으로 役割을 할 수 없게 되자 각國은 非關稅措置를 利用하여 國내產業을 보호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쳐면서 더욱 加속화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爲한 11개의 MTN Code는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에 效果的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各種 비관세장벽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關稅의 갈이可視性이 없어서 이를 摘出해 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GATT 19條를援用한 產業救濟措置는 선진국에서 번번히 發動되고 있으며 또한 中進國에 대한 선별규제를 하고 있어 最惠國待遇條項에는 크게 違反하고 있는 實情이다. 최근에 으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O.M.A(Olderly Marketing Arrangement)의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등 輸入國의 壓力에 의한 輸出自律規制의 誘導는 灰色地帶措置(Grey Area)라고 하여 우루파이 라운드에서는 關係國間에 열띤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貿易環境변화에 따른 GATT의 適應必要

산업 고도화에 따라 서어비스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며 서어비스는 이미 세계 총 GDP의 64%(1980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서어비스 무역은 6,100억불(1980년 기준)으로 世界 총 상품교역의 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용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고용의 70%정도가 서어비스業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어비스를 除外하고 상품만을 交易의 대상으로 하는 GATT는 이를 改正하여 서어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의 主張은 이를 肯定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날 多國籍企業의 活動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國家間의 투자와 기술교류가 더욱 긴밀화되고 있는데 호응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의 자유화와 지적소유권보호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무역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으로 GATT에서는 이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번 우루파이 라운드 선언문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4) 미국의 무역적자

흔히 自由貿易期라고 일컫는 1950~1960년대는 GATT의 노력에 의하여 自由貿易이 유지되었다가 보다는 PAX Americana라는 가치하에 미국이 自國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하는 수단으로 自由貿易을 지탱해 왔다. 즉 GATT를 中心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란 일종의 대리자에 不過하고 실질적인 自由貿易 수호자는 美國이었다. 美國이 이와같이 自由貿易을 譜歌하고 이를 守護한 것은 自國產業의 막강한 競争力으로 因하여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의서事情은 달라져 美國의 貿易은 지난해에도 1,700억弗에 이르는 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美國의 製造業의 洞空化現狀에 의한 競争力喪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은 既存의 GATT規定에는 더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이를 개정해서 美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農산물, 서어비스의 交易自由化와 High Tech제품의 交易을 為한 知的所有權保護, 多國籍企業의 활동을 為한 投資環境改善을 國際規範화하려는 것이다.

다. 推進經緯

1983年 11월 美·日頂上會談에서 나카소네 首相은 데 이전 대통령에게 New Round 추진을 提議하여 이를

爲하여 兩國이 共同努力할 것에 合意하게 되었던 바이와같은 日本의 적극적인 발의에는 양면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현재 GATT의 自由貿易體制로 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며 日本은 이제 經濟大國으로서 자유무역체제를 守護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貿易赤字가 가장 큰 나라는 日本이며 이로인한 미국의 日本에 대한 불만은 兩國間 貿易協商에서 강력한 輸入開放壓力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兩國間 雙務的協商을 多者間協商으로 옮고감으로써 雙務의 壓力を 회피하고 다른 나라와共同으로 自由化方向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같은 美·日間의 합의후 다음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차례의 공식, 비공식회의를 거쳐 1986년 9월 우루파이 라운드를 선언하기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立場의 차이에서 오는 對立과 갈등은 매우 심하였으며 우리나라は 先進開途國으로서 이러한 선·후진국의 仲裁者的役割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5월에는 주요 貿易國의 貿易長官과 GATT關係官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非公式會議를 개최하여 New Round의 早期出帆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表 2〉 우루파이 라운드 閣僚 宣言까지의 經緯

| 일자 | 회 담 | 주 요 내 용 |
|---------|----------------------|--|
| 83. 5. | 윌리암스버그經濟頂上會談(Summit) | ○새로운 貿易自由化교섭實現에 努力할것을 합의 |
| 83. 11. | 美·日 首腦會談 | ○美·日 主導下에 뉴라운드 推進을 合意(나카소네 선언) |
| 84. 3. | 東京 심포지움 | ○심포지움을 통한 뉴라운드 추진을 합의 |
| 84. 4. | 서울 國제무역회의 |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참여 방안모색 |
| 84. 4. | 발리 회의 | ○뉴라운드에 대비, 亞·太地域國家協力方案모색 ○83年 11月 호주 재안에 의향 |
| 84. 5. | 워싱턴 通商長官會議 | ○뉴라운드의 早期準備의 必要性에 對하여 合意 |
| 84. 5. | OECD閣僚이사회 | ○뉴라운드의 早期準備의 必要性에 對하여 合意 |
| 84. 6. | 런던經濟頂上會談(Summit) | ○뉴라운드 早期開始에 合意 |
| 84. 6. | 西方 4國通商會議 | ○뉴라운드推進戰略檢討 |

| | | |
|---------|-------------------|--|
| | | (推進方向 및 對開途國交涉戰略) |
| 84. 9. | 브라질通商長官會議 | ○先進國, 뉴라운드 早期開始의 必要性을 強調 |
| 84. 11. | 第40次 GATT總會 | ○뉴라운드에 대한 先·開途國間 意見對立 ○美·日·EC 등 뉴라운드 推進必要性 공식제의 |
| 85. 2. | 3國通商長官會議 | ○86年에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目標로 할것에 합의 |
| 85. 3. | E.C理事會 | ○E.C뉴라운드 참여를 정식으로 表明 |
| 85. 4. | OECD閣僚理事會 |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뉴라운드 開始하기로 合議 |
| 85. 5. | 본 經濟頂上會談 (Summit) | ○OECD의 公式聲明을 支援 |
| 85. 6. | 스톡홀름 世界通商長官 會議 | ○7月의 GATT理事會에 各國의 입장을 밝히는 Submission paper를 제출하기로 함 |
| 85. 7. | GATT理事會 | ○서어비스의 議題包含을 反對하는 强硬開途國에 의하여理事會自體가 無期延期됨 |
| 85. 10. | GATT特別總會 | ○뉴라운드 準備委員會(Group of senior officials)을 設置하여 준비에 몰입함 |
| 85. 11. | 第41次 GATT 定期總會 | ○뉴라운드 준비 위원회가 결성됨. ○동준비위원회는 '86.1~7月까지 활동 |
| 86. 1. | 뉴라운드 準備委員會 第1次 會議 | ○서어비스의 議題包含 여부決定하지 못함 |
| 86. 5. | 서울세계통상장관회의 | ○뉴라운드개시를 위한 先·開途國間의 事前協議 |
| 86. 5. | 先進國世界經濟頂上會談 | ○뉴라운드등 당면한 世界經濟 현안논의 |
| 86. 7. | 뉴라운드 準備委員會 終結 |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閣僚宣言草案 3個案作成 |
| 86. 9. | GATT 閣僚會議 | ○우루과이 라운드로 命名하고 宣言文을 채택함 |

III. 閣僚宣言文 内容 및 協商構造

가. 우루과이 라운드 閣僚宣言文

1986年 9月 우루과이에서의 각료선언문을 準備하기 위하여 準備委員會가 設置되고 同準備委員會는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協商의 基本規範(Modelity)를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論議하였다. 가장 큰 爭點은 서어비스를 議題에 포함시킬 것인가였고, 그외에도 투자, 지적 소유권문제등 New Issues와 農산물에 대한 오랜동안의 論難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각료회의에 제출한宣言文草案이 單一案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선진국이 제안하고 온건 개도국이 지지하여 32개국의 지지를 받은 소위 G-32案과 강경개도국이 제출한 G-10案, 그리고 양자를 결충한 알제린案의 3個案이 共同으로 提出되었다. 其中 알제린案은 전혀 다른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G-32案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序 文

○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선언(우루과이 라운드라 命名함)

○ 貿易協商을 實施하기 위한 貿易協商委員會(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設置하고 1986年 10月 31日 以前에 첫 모임을 갖기로 함.

○ 協商은 4年 以内에 終結키로 함.

② 第1部(商品貿易에 관한 協商)

○ 目 的

—世界貿易의 自由化 促進

—GATT의 機能強化

—國際貿易 環境變化에 適應한 GATT體制

—個別國과 經濟協力의 強化(특히 經濟政策)

○ 協商原則

—明確性(Transparent manner)

—모든 協商結果의 履行은 單一課題의 部分으로 取扱 되여야 함.

—均衡된 相互讓許

—開途國에 대한 優待條項適用

—最後進國에 대한 特別配慮

○ 保護主義措置의凍結(Stanstill)과 철폐(Roll back) : 협상기간중 GATT 위배 조치를 동결하고, 협상이 동결되기전 합意된 계획하에 GATT 위배 조치는 철폐함.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貿易協商委員會가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제반체계에 대한 결정을 함.

○ 協商對象 : 1) 관세. 2) 비관세조치. 3) 热帶產品
 4) 天然資源產品. 5) 섬유 및 의류. 6) 농산물. 7)
 GATT규정. 8) 긴급수입제한 조치. 9) MTN協定 10)
 보조금과 상계 관세. 11) 紛爭解決節次. 12) 知的所有
 權의 貿易關聯 側面(위조상품 포함). 13) 貿易關聯 投
 資措置

○ GATT體制의 機能

—GATT 감시기능의 강화

—GATT의 意思決定과 效率性 提高

—通貨機構와의 協調를 通한 GATT의 기능증대

○ 協商參與 : GATT會員國, 참정가입국, 實體적用
 途, 加入節次 推進開途國

○ 協商의 組織 : GNG(Group of Negotiation on
 Goods)가 協商의 제반 문제점과 과정을 책임짐.

③ 第2部(서어비스 貿易에 관한 協商)

○ 서어비스에 대한 多者間貿易原則 및 規範을 設定
 하기 위한 協商開始를 決定함.

○ GATT절차와 慣行을 서어비스협상에도 적용함.

○ 서어비스協商그룹(GNS : Group of Negotiation
 on Service)을 設置(TNC에) 보고키로 함.

④ 第1部와 第2部 協商結果의 處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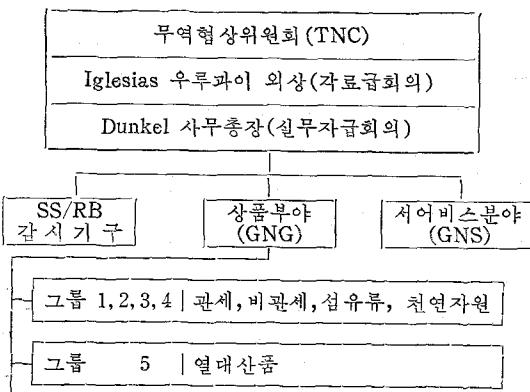
○ 모든 協商終了後 特別閣僚會議를 개최하여 履行
 方法을 決定함.

나. 協商構造 및 計劃

1) 協商機構

협상구조는 다음 圖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貿易協商
 委員會(TNC) 밑에 Standstill and Rollback 감시기구
 와 상품분야협상그룹(GNG)과, 서어비스분야 협상
 (GNS)를 두고 다시 GNG 밑에 各議題別로 협상 소구
 를 두어 이를 추진토록 되어 있다.

〈圖 表〉



| |
|--------------------------------|
| 그룹 6 농산물 |
| 그룹 7, 8 GATT규정 및 MTN협정 |
| 그룹 9 Safeguards |
| 그룹 10 보조금 및 상계관세 |
| 그룹 11 위조상품 및 저적소유권 |
| 그룹 12 무역관련 투자 |
| 그룹 13, 14 분쟁 해결 절차 GATT 가능강화 |

분야별 의장선출(12名)

○ 선진국 : 6名(미국, 일본, 호주, 화란, 스웨덴,
 캐나다)

○ 개도국 : 5名(한국, 브라질, 말련, 홍콩, 우루과
 이)

○ GATT : 1名

2) 協商計劃

협상은 초기 단계와 후속 단계로 구분하여 協商을 進
 行키로 하였으며 初期段階('87年 末까지)에서는 협상
 대상을 도출하고 이를 확인키 위하여 各國의 提案과
 현행 제도를 檢討할 것이며, 후속 단계 ('88 이후)에서는
 初期段階의 結果를 基礎로 協商目的에 따라 結論을 導
 出하는 것으로 計劃하였다.

3) 協商의 展望

협상의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여 현재까지의 의
 제별 협상진전은 긍정적이나 협상의 성공여부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각료선언문에서는 4년내에 타결을 목표로하고 있으
 나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각국의 이해와 關心이 상이하
 며 주요 이슈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울 것 같아 早期妥結의 展望은 어두운 것으로 생각
 된다. 뿐만 아니라 1988年の 主要國選舉, 美國等 議會
 内 保護主義立法動向, 各國間 貿易不均衡 및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때 1989년 以前까지는 同協商의 진전이 더
 덜 것으로豫想하고 있다.

東京타운드의 경우도 8년이 걸린것을 볼 때 이번 우
 루과이 타운드와 같이 광범위한 협상은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계속>